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제안사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사는 감사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소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조사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발의(조사, 목적, 범위 등 기재)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안 제7조)

마.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사.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아.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11조)

자.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며,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제안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운영규정)

4. 심사의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수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심사한 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4 조 (지방 자치법 제 36 조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 ① 위원회는 교육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소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 1 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위원회는 제 3 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 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조사)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중 특정시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발의하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 2 항의 조사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사소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 2 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 5 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무보조자)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 5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 9 조 제 2 항 제 5 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조정) 위원회는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7 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며, 그 요구서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주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 조의 6 및 제 17 조의 7 준용)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4 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법 부칙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임기개시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